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지방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여 지방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되, 계약 상대방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선금 지급 한도 확대(안 제44조제1항제13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되,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3호 중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70”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 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선금급) ① ----- -----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 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 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 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 액 <단서 신설>	13. ----- ----- -- 70----- ----- ----- -----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14. · 15. (생 략)	14.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76